|  |  |  |
| --- | --- | --- |
| **사용자 직업병 예방 및 퇴치에** **관한 8가지 규정**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76호<사용자 직업병 예방 및 퇴치에 관한 8가지 규정>이 2015년 3월 23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부터 시행한다.국장 양둥량(楊棟梁)2015년 3월 24일1. 직업병 피해 예방·퇴치 책임제도를 반드시 수립 및 완비해야 하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법과 규정을 어기고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2. 업무현장이 직업위생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고 직업병 위험 표준이 초과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3. 직업병 방호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직업병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4. 근로자에게 반드시 요구에 부합되는 방호용품을 착용시켜야 하며 위조품·불량품을 착용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5. 업무현장과 작업구역에 반드시 경고표지와 고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업병 위험성을 은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6. 직업병 위험성 검사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조작하거나 줄이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7. 근로자에게 반드시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8.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  | **用人单位职业病危害防治****八条规定**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76号《用人单位职业病危害防治八条规定》已经2015年3月23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局长 杨栋梁2015年3月24日一、必须建立健全职业病危害防治责任制，严禁责任不落实违法违规生产。二、必须保证工作场所符合职业卫生要求，严禁在职业病危害超标环境中作业。三、必须设置职业病防护设施并保证有效运行，严禁不设置不使用。四、必须为劳动者配备符合要求的防护用品，严禁配发假冒伪劣防护用品。五、必须在工作场所与作业岗位设置警示标识和告知卡，严禁隐瞒职业病危害。六、必须定期进行职业病危害检测，严禁弄虚作假或少检漏检。七、必须对劳动者进行职业卫生培训，严禁不培训或培训不合格上岗。八、必须组织劳动者职业健康检查并建立监护档案，严禁不体检不建档。 |